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 일시: 3월 29일(금) 오후2~5시
- 장소: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 주최: 김기준 국회의원,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 주관: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발제 및 패널

●발제: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방향..... 5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 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가 겪고 있는 금융 관련 문제\_ ..... 19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토론:

- 조혜경 (한화생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47
  - 이현배 (성남주민신용협동조합 전무) ..... 49
  -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 61
  -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 ..... 63
  - 정원각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 65
-



## [인사말씀]



안녕하세요!

제 19대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김기준입니다.

한국 협동조합 운동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지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100일 동안 협동조합 신청이 647건이나 접수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5년간 1만 4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약 4만 9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협동조합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으며, 장밋빛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열리는 토론회의 주제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입니다. 협동조합의 설립과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립적으로 금융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의 역할은 협동조합의 위기 시에 고용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도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동조합의 신용사업 허용 여부를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며, 신탁과 신설 협동조합 간 협력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문제의식, 합리적 해결방안이 모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협동조합과 관련한 법률 개정과 각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와 현장속의 협동조합 활동가님, 관련부처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발표와 토론으로 참여해 주시고, 토론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금융의  
역할제고 및 제도개선 방향**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및 제도개선방향

장종익 (한신대 글로벌협력대학)

## 1. 머리말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은 다양한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소유제도방식의 기업으로 거래를 활성화하여 경제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질 좋은 일자리의 제공,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활동의 선구적 추진, 조합원간의 협동과 민주적 참여의 훈련, 동종 및 이종협동조합간의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의 기여, 지역사회 내 신뢰와 연대의식의 함양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협동조합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치 3%에 불과한 바닷물의 소금처럼 주식회사 중심의 시장경제의 폐단을 견제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우리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는가는 협동조합운동을 추진하는 주체들의 시대적 과제 해결의지, 협동조합적 기업경영역량, 그리고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정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협동조합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모델로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어야한다. 그러한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에 600여개 이상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과연 경영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태계조성이 필요한데, 협동조합 주체역량 함양,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지원금융체제의 구축 등이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른 사업운영 및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에 특화된 지원금융체제의 구축은 협동조합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세계적인 협동조합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국의 선키스트(Sunkist)는 1933년에 설립된 코뱅크(CoBank)라고 하는 협동

조합은행의 금융적 지원을 받아왔으며, 세계적인 원예협동조합인 네덜란드의 그리너리(Greenery)는 라보뱅크(Rabobank)협동조합은행의 금융적 지원을 받고 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가 발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협동조합은행인 노동금고(Caja Laboral)였다. 노동금고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몬드라곤협동조합은 상상하기 힘들 것이다. 이탈리아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발전한 배경에는 협동조합경제은행(Banec), 협동조합연대기금 등 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캐나다 퀘벡에서의 다양한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사회적 투자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데잘덴신협그룹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협동조합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본고는 왜 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가 필요한지, 해외 협동조합 선진국에서의 지원금융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 구축을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정책적 개선과제가 필요한가를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 2.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의 필요성<sup>1)</sup>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상업은행이나 투자은행이 중심이 되어 주로 주식회사나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농민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의 경우에는 정책금융적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주식회사 이외에도 협동조합 형태의 기업 또한 발전해 왔다. 협동조합은 경제적 이해당사자들이 자조적인 조직화를 통하여 독과점문제나 재화 및 서비스 품질 정보의 비대칭문제에의 대응, 구조적 실업문제에의 대응, 자본주의적기업이 낮은 이윤율로 인하여 기피하는 지역에서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지역에서 사회적 통합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설립 확산되어 왔다(장종익, 2012a). 이처럼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원리도 다르다는 점에서 전통적 금융과는 성격이 상이한 자금지원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기업의 목적이 다르다. 주식회사는 이윤극대화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은 이러한 기업 목적의 차이로

---

1) 장종익, 박종현(2013)에서 주로 인용함.

인해 공급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정책, 잉여금 처분정책 등의 측면에서도 주식회사와 차이를 드러낸다.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의 소유주와 사업의 이용자가 일치하므로, 재화 및 서비스가격의 최대화정책을 추구하는 주식회사와 달리, 이용자 및 원료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장기적 거래관계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격정책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 금융기관들은 투자대상 기업의 효율성과 재무적 수익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출 의사결정을 내린다는 점에서, 주식회사 등에 비해 표면적인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자금을 적정 수준 이하로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자본금 조달의 특수성 문제도 있다. 주식회사는 투자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주로부터 자본금을 조달하고 궁극적으로 기업공개, 곧 증권거래소 상장을 통하여 회사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주주들이 공유할 기제를 지니고 있다. 이 경우 주주들은 투자 원금과 이익을 회수하는 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창업 아이디어나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제공할 동기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에 협동조합 기업은 자본금을 사업 이용자인 조합원으로 한정해 조달하는데, 이때 조합원의 1인당 지분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출자증권의 발행도 제한적이다. 출자증권의 거래 또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자본금 역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생산자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주식회사 투자자에 비하여 투자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더 높기 때문에 저투자 경향도 발생한다(Hansmann, 1996).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협동조합 방식의 기업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적정 수준보다 적게 존재하기가 쉽다. 이 점은 협동조합의 경우 지분투자 등 투자은행과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과 관련해서도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으로부터 도움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기업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도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차이를 보인다.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와 주가를 바탕으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기가 매우 용이하다. 반면에 협동조합의 중요한 성공 조건이 현재 및 잠재적 조합원의 필요와 열망을 조직화하고 이를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때는 비재무적 자원의 연계능력,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 지역사회 내에서의 사회적 신망 등 재무제표로는 드러나지 않는 여러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 반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기업 평가를 수행해왔던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기관은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사회적 신뢰나 조직적 역량과 같이 협동조합에 고유한 특성들은 수량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이들 요인에 관심을 가지더라도 가치평가에 포함시키

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협동조합에 특화된 금융기관과 금융제도가 구축되지 않으면 협동조합은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자본금의 부족문제에 직면하여 적정 규모에 미달하거나 비효율적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적지 않은 협동조합들이 문을 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적 창업아이디를 구상하게 되더라도 이러한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자금지원기관이나 투자중개기제가 존재하지 않으면 유산되는 창업아이디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의 실태로부터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금융체제가 미흡함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012년 9월 인증 사회적기업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사회적기업의 지원요구사항으로 사업자금이나 시설자금에 대한 금융지원이 3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병유 외, 2012).

### 3. 선진국에서의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의 발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동조합은 필요한 자금을 전통적인 금융기관이나 주식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금융제도가 발전하여 왔다.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는 각국의 고유한 역사적·제도적 특성을 반영해 나라마다 다르게 형성되어 왔는데,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협동조합총연합회 또는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 차원에서 은행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

첫째, 협동조합총연합회 또는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 차원에서 은행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자의 협동조합이 발전한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프랑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비자협동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이 여기에 속한다.<sup>2)</sup>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노동자협동조합의 복합체를 성공시킨 호세 마리아 신부는 기존의 상업은행들로부터는 협동조합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자본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

---

2) 스페인 몬드라곤, 이탈리아,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의 자본조달과 지원금융체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중익(2013)을 참조할 것.

단하여 1959년에 협동조합은행인 노동인민금고(Caja Laboral Popular)를 설립하였다. 노동인민금고는 조합원들에게 상호금융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순소득을 사용해 기존 조합의 확장이나 새로운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도 공급하였다(Whyte and Whyte, 1991).<sup>3)</sup>

노동인민금고는 협동조합에 관한 컨설팅, 인큐베이팅 역할뿐만 아니라 전체 몬드라곤 협동조합들의 기획 및 조정, 자원의 재배분기능을 담당하였다는 특징도 지닌다. 카자는 모든 협동조합들의 주 거래은행이었기 때문에 카자는 협동조합의 재무상태와 사업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협동조합그룹차원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카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원리에 근거한 금융거래가 아니라 그룹 내부 거래 원리에 입각한 컨설팅 및 연대금융거래를 시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sup>4)</sup> 몬드라곤에서 노동자협동조합들이 큰 규모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바로 노동인민금고의 이러한 강력한 기능에 있으며, 이러한 지원체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여타 스페인 지역에서는 노동자협동조합들 대부분이 소규모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동조합이 제법 큰 규모로 고르게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협동조합총연맹(Lega Coop) 차원에서의 금융기관 설립이 관찰된다. 레가코프는 이탈리아 최대 국영신용기관인 IMI와 공동으로 “협동조합운동을 위한 전국금융회사(FINEC)”를 1987년에 설립하였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은행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벤처캐피탈, 장기투자, 시장분석 및 리스크 분석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레가코프는 소비자협동조합의 신규 매장 개설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Banec)도 운영 중이다.

또한 이탈리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이 크게 발전한 이후 사회적기업처럼 공공적 이익증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확산을 위해 모든 협동조합들이 자금의 공급자로 참여해 조성한 협동조합연대기금이 1992년부터 존재하고 있다. 이 기금은 모든 협동조합이 순소득의 3%를 출연해 조성된 것으로 새로운 협동조합의

3) 노동인민금고는 금융협동조합이기는 하지만 설립 당시에는 개인 예탁자가 아니라 노동자협동조합과 기타 협동조합들을 조합원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금융협동조합과 차별화된다.

4) 여기에서 연대금융거래는 개별 조합이 경기 악화로 인하여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금융비용부담을 완화시켜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일종의 교차보조(cross-subsidy)방식이다. 이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수행해왔던 계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방식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차보조방식이 가져올 수 있는 도덕적해이의 가능성을 어떻게 줄여나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연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설립, 기존 협동조합의 발전, 비협동조합기업의 협동조합기업으로의 전환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탈리아 3대 총연맹이 이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레가코프의 코프펀드(Coopfond)는 2005년까지 3억 4천만 달러를 조성하였다(장종익, 2012b).

프랑스의 노동자협동조합의 경우에도 연합회(생산노동자협동조합총연맹CGSCOP, Confédération Générale des Société Coopérative Ouvrière de Production)를 중심으로 지원금융이 발전하였다. 프랑스에서 노협이 법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연합조직에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조합은 총 수입의 0.42%를 연합회에 회비로 납입해야 한다. 일반적인 금융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CGSCOP의 회원 노협들은 전국연합체 내부에 조성된 개발기금인 SOCODEN을 비롯한 자체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1965년에 설립된 SOCODEN은 회원 노협들이 1년 매출의 0.1%를 납부하여 조성하는 개발기금으로서, 신규 노협 설립이나 기존 노협에 대한 지원을 위해 사용되며 주요하게 대출, 자본명목의 투자, 보증의 방식으로 집행된다.

기금의 주요한 집행심사와 결정은 지역연합체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 지역단위 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지역연합체에 소속된 컨설턴트들이 기금신청자들의 신청과정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 협동조합들에 보다 가까이 위치한 지역연합체 수준에서 기금에 대한 심사와 결정을 하게 됨으로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게 되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매년 평균 150건의 투자 및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외에 SOCODEN의 보증을 통한 협동조합 은행(Crédit Coopératif)에서의 대출이 100여건 정도 이루어진다. 이밖에도 프랑스 노협연합회 회원 협동조합들의 리더들에게 대부보증을 제공하는 기금인 SOFISCOP, 노동자협동조합을 위한 벤처캐피탈인 SPOT, 노동자생산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조직 기업들에 지분 투자를 실행하는 사회적경제개발기관(Institute for Development of Social Economy, IDES) 등의 금융수단이 있다 (CECOP, 2008; Soulage, 2011).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소비자협동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사업연합회(Cooperative Wholesale Society)가 1876년에 설립한 협동조합은행(Cooperative Bank)이 눈에 띈다. 이 은행의 설립목적은 신용협동조합과 달리 지역의 소비자협동조합들을 대상으로 예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은행은 이후 고객층을 개인들로 확대하였는데, 이때에도 주된 목적은 소비자협동조합들의 자금 수요 충족에 있었다.

## (2) 금융협동조합 중심의 지원금융체제

협동조합지원금융의 두 번째 유형은 금융협동조합(financial cooperatives)이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신용협동조합은 예적금, 보험, 대출서비스를 주로 개인조합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캐나다 퀘벡의 데잘탱(Desjardin)신협 경우에는 경제적 약자들이 협동조합이나 연대협동조합(solidarity cooperatives)을 설립하거나 확산시킬 수 있도록 자금지원 기능을 수행해 왔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데잘탱신협이 주도해 1971년에 설립한 데잘탱 연대경제기금(Caisse d'économie solidaire Desjardins)이 대표적이다. 이 기금은 지역의 진흥과 사회적 주택의 설립을 추진하는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을 대상으로 자금을 제공하였다(장종익, 2012b).

또한 퀘벡 정부는 지역공동체 기업을 포함하여 비영리기업을 위한 대출보증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 경제의 투자기관을 허용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이 일환으로 새로운 펀딩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Investissement Québec은 협동조합적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Collective Entrepreneurship Program)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본조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Regime d'investissement cooperative는 노동자협동조합, 생산협동조합, 노동자-투자자협동조합의 노동자들이 자신의 협동조합들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재무적 수단이다.

연대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금융체제의 발전이 없이는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데 데잘탱신협그룹은 이러한 사회적 금융체제의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퀘벡의 사회적 경제부문의 비영리조직들은 기부, 기탁금, 정부보조, 프로그램펀딩, 채무보증, 자체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러한 자금조달방식으로는 시장활동을 통하여 사회·경제·환경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필요자금을 조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퀘벡에서는 지난 10여년 동안 사회적 금융이라고 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금융기관을 매개로 새로운 주체와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으며, 혁신적인 투자상품과 기술적 지원이 고안되고 이행되었는데, 데잘탱신협이 이러한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 크게 발전한 이탈리아의 경우에 신협(Banche di Credito Cooperativo, BCCs)이 적지 않은 금융지원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면 트렌토 지방에는 46개의 협동조합신용은행이 활동하고 있는데 지역 예금의 65%를 취급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점유율이 높은 편이다. 트렌토 지방의 가장 큰 특징은 지역

에서 올린 소득의 97%이상이 지역에서 소비되고 투자된다는 점이다. 특히 협동조합신용은행은 지역의 사회적 통합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주도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들은 당기순이익의 3%를 협동조합연대기금에 출연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나머지 이익금도 대부분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기부금을 사용되고 있다 (Sforzi, 2011). 트렌토 지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확산을 위한 협동조합신용은행의 역할을 분석한 실증연구(Sforzi, 2011)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내 협동조합신용은행으로 주 거래 은행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신용은행은 물적 담보가 부족한 사회적협동조합들에 대하여 다양한 금융지원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신용은행은 지역 내의 사회적 목적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들에 대한 기부, 대출뿐만 아니라 홍보 및 후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정부 차원에서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 설립

마지막으로 정부차원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정부는 1933년에 농업협동조합의 운영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하기 위해 코뱅크(CoBank)의 설립을 지원하였다. 미국의 세계적인 협동조합으로 알려진 선키스트(Sunkist)를 포함해 많은 농협들이 코뱅크의 금융지원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이탈리아 정부도 노동자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한 자금지원 제도를 수립하였다. 1985년에 마르코라법(Marcora)을 제정해 산업조정으로 유희노동력이 된 노동자,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의 노동자 중에서 생산/노동자협동조합을 만드는 이들에게 출자금의 3배 금액을 정부가 보조하였다. 이 법에 따라 1986년에 세워진 Cfi(Cooperation, finance, enterprise)는 Marcora fund를 통해 파산한 주식회사가 종업원소유기업으로 탈바꿈하도록 자금을 지원하였다(장종익, 2012b).

캐나다 퀘벡의 경우에는 주 정부가 집단적 기업, 면단위와 군단위 개발조직, 그리고 사회운동조직들을 결합시키는 비영리조직인 사회적 경제 회의소 (Chantier de l'économie sociale)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인정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Réseau d'investissement social du Québec (RISQ)가 사회적 경제 회의소에 의해서 1997년에 설립되었는데, RISQ는 협동조합적 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 대출보증 혹은 참여적 대출을 5만 달러까지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5천 달러까지 소규모 기술적 지원을 받기 위한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 4. 한국에서의 협동조합지원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제안: 맺음말에 대신하여

한국에서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8개 종류의 기존 협동조합이 물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는 체계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1차 산업분야의 협동조합 즉, 농협, 수협, 임협 등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겸영해 왔고 나머지는 신탁과 새마을금고 등 금융협동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농협은 경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용사업을 통하여 조달된 예수금을 내부 이전을 통하여 차입하는 방식으로 조달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의 필요성을 해소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품목농협과 임협은 신용사업 수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경제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융이 부재하여 상호금융업무를 허용하였다. 또한 신탁과 새마을금고는 경제적 약자들 사이의 자금의 상호융통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경제적 약자들의 협동사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기능을 발전시켜오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적 약자들이 고리채를 해결하기 위한 신탁 및 새마을금고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설립할 수 있는 자유는 주어졌지만 2차 및 3차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 성장한 한살림, 아이쿱생협 등 친환경생활재공동구매생협의 연간 매출액이 6천억원이 넘어서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자금 조달과 내부 유보자금의 적절한 운용 등을 위한 지원금융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또한 전국에 3천여개가 넘는 자활협동사업조직들 또한 지원금융을 필요로 하고 있다. 더욱이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사업자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등 사업자금이 더욱 필요로 되는 협동조합의 경우 지원금융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음에도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이러한 협동조합의 자본금 조달방안에 대한 규정도 매우 미흡하고 금융 및 보험서비스 분야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열악한 협동조합지원금융인프라 상태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통하여 주장하는 향후 5년 동안 최대 1만 여개의 협동조합 설립 및 최대 5만 여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예상은 장밋빛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향후의 과제로 미룬다. 협동조합 지원금융체제에서 핵심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은 금융중개기관의 조성,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자의 조성,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감축방안 등의 마련이다.

첫째,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와 용자기능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은 협동조합의 비즈니스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발하고 컨설팅기능을 담당하며, 인큐베이팅기능에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에서 간략히 살펴본 외국의 사례가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첫째,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일선의 조직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신협 등 협동조합금융기관은 선진국에서의 설립목적과 유사하게 고리채가 만연하고 예금보험기능이 부재하였던 개발연대에 금융배계층에 대한 신용제공을 목표로 세워져 성공적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사회의 시대적 과제는 개발연대와는 크게 달라졌으며, 협동조합금융조직의 시대적 역할 또한 재정립되어야 할 상황에 직면하였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개인 대출서비스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들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투융자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적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신용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과 장점 및 단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지원매뉴얼을 작성하는데 커다란 장점이 있다. 또한 신협중앙회나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사회투자기금을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의 거점 신협 등에서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을 실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이 보다 전문화되고 효율화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협동조합금융기관들의 통합과 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소위 개발연대의 미션으로 출범한 협동조합금융기관들의 조직과 사업 및 정부와 관계, 그리고 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농협금융기관은 농식품부, 신협은 금융위원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등으로 분할되어 있는 감독체계도 통합될 필요가 있으며, 신협 등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협동조합의 경우 연합조직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의 중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연합조직에서 공제기금이나 연대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협동조합지원금융기관 조성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금융기능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자의 조성이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이 1990년대에 크게 성장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는 1992년에 도입된 투자조합원제도라고 평가된다 (Menzani, and Zamagni, 2010). 우리나라 농협법에도 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우선주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협동조합기본법에는 투자조합원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처럼 협동조합연합회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회적지원이 필요한데,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중개기관이 사회적예금상품의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예금상품 구매자에게 이자소득세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이 효율적으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적기업가정신이 충만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선별할 수 있어야 하고, 자금지원 이후에 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개별 협동조합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전문적인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금융지원과 연계될 필요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신용보증기관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 매뉴얼 작성을 위한 검토작업이 시급하며, 협동조합에 대한 소프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합회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금융의 필요성과 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시급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금융서비스부문의 특수성에 비추어 금융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건전성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언급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상 금융배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운영해온 자활공제협동조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전국에는 현재 1만 여명에 가까운 저소득층들이 75개의 자활공제협동조합을 운영중에 있거나 설립을 추진하여 무이자 및 3% 이내의 이자율로 소액대출사업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조합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자주적이고 자립적인 협동조합금융조직의 설립 노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장종익, 2012a,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이후 한국협동조합의 역할과 과제,” 『동향과 전망』, 86호, pp. 289-320.
- 장종익, 2012b,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협동조합지원 금융체제 구축을 위한 신협발의 발전방향,” 『2012 신협발전 세미나』, 2012. 10. 18, 신협중앙회 연수원.
- 장종익, 2013, “이탈리아, 몬드라곤, 프랑스 노동자협동조합 발전시스템에 관한 간략한 비교 분석,” 한국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설립추진단 발족 기념토론회 자료집, 2013년 1월 30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장종익, 박종현, 2013, “사회적금융의 실태와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사회경제평론』 40권, pp. 123-159.
- 전병유 외, 2012, 『사회적기업 실태 조사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Hansmann, H., 1996, *The Ownership of Enterprise*,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 Menzani, T. and V. Zamagni, 2010, “Cooperative Networks in the Italian Economy,” *Enterprise & Society*, Vol. 11(2): 98-127.
- Sforzi, J., 2011, “Social Innovation and Local Development: The Role of Credit Cooperative Banks in Trentino (Italy),” 3<sup>rd</sup> EMES International Research Conference on Social Enterprise, Roskilde (Denmark), July 4-7, 2011.
- Whyte, W. and K. K. Whyte, 1991, *Making Mondragon: The Growth and Dynamics of the Worker Cooperative Complex*, Ithaca, NY: ILR Press, (김성오 역, 『몬드라곤에서 배우자』, 나라사랑, 1992).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가 겪고 있는  
금융 관련 문제**

문보경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 협동조합 설립 ·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금융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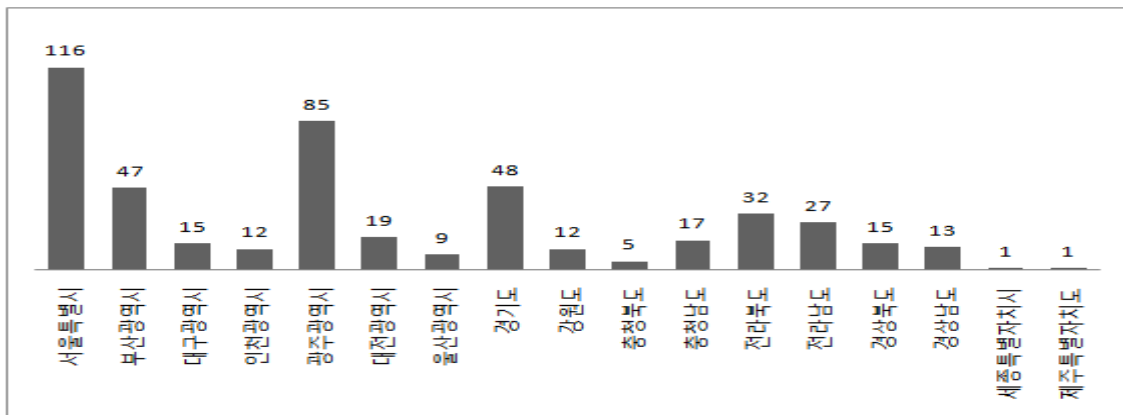
문보경(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 1. 최근 협동조합 설립 현황과 문제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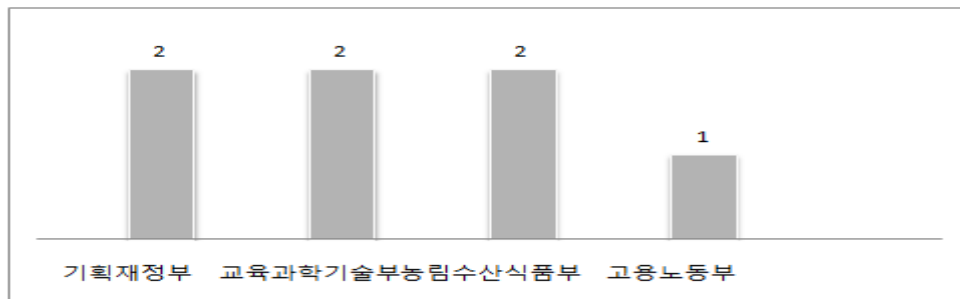
### 1) 협동조합 설립 현황

지난 3월 10일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00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3월 10일 현재 일반협동조합 474건과 사회적협동조합 7건으로 총 481건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림 1. 지역별 일반협동조합 설립 현황>



<그림 2.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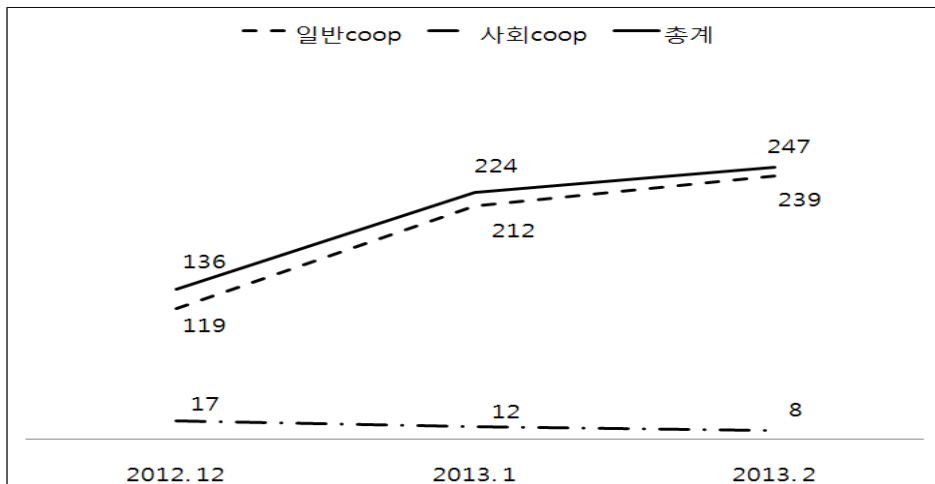
- 3.10일까지 전체 설립신청 건수는 총 647건으로 일반협동조합이 605건, 사회적협동조합 40건, 협동조합연합회 2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월별 신청 건수>

	2012년 12월	2013년 1월	2013년 2월	2013년 3월 10일
일반협동조합	119	212	239	35
사회적협동조합	17	12	8	3
협동조합연합회	0	0	1	1
월 총계	136	224	248	38
1일 평균	4.5	7.5	8.9	3.8

- 협동조합 신청의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온 반면,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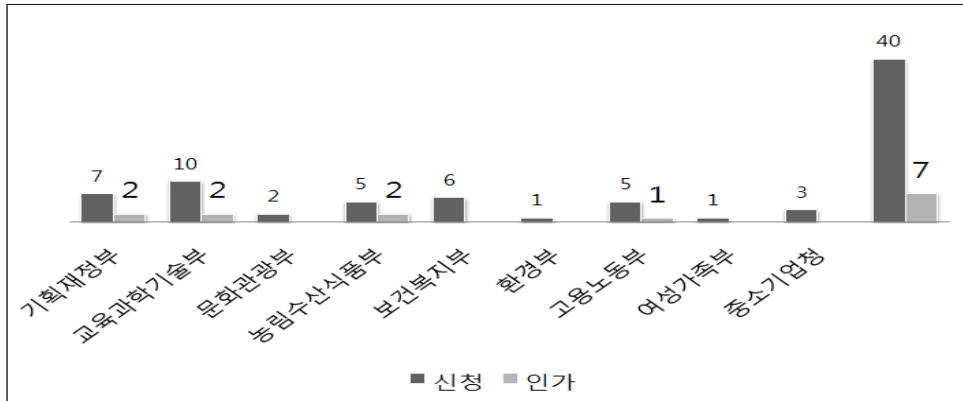
<그림 3. 월별 협동조합 신청 추이>



- 협동조합 설립 신청 대비 수리 및 인가율은 평균 74.3%를 보이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의 신청 대비 수리율은 78.3%이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17.5%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사회적협동조합 신청 및 인가 현황>



□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신청 대비 평균 수리율은 78.3%인데, 특히 경상남도는 100%,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의 경우 90% 이상의 수리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시 및 서울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의 경우 수리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표 2. 일반협동조합 설립 신청 및 수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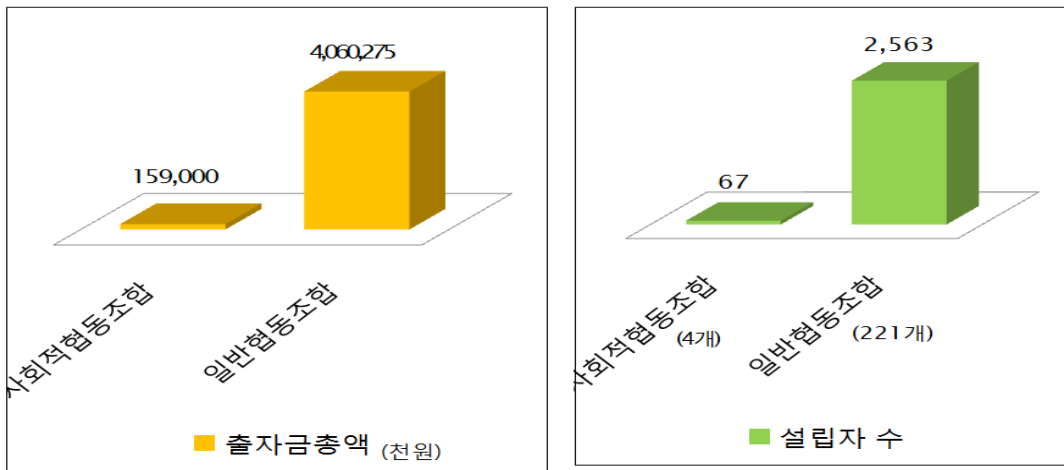
	신청	수리	수리율
서울특별시	174	116	66.7
부산광역시	50	47	94.0
대구광역시	16	15	93.8
인천광역시	17	12	70.6
광주광역시	95	85	89.5
대전광역시	21	19	90.5
울산광역시	11	9	81.8
경기도	68	48	70.6
강원도	21	12	57.1
충청북도	8	5	62.5
충청남도	19	17	89.5
전라북도	33	32	97.0
전라남도	28	27	96.4
경상북도	25	15	60.0
경상남도	13	13	100.0
세종특별자치시	2	1	50.0
제주특별자치도	4	1	25.0
합계	605	474	78.3

2) 협동조합의 조합원과 출자금 현황5)

□ 1월 31일 기준으로 할 때, 일반협동조합 221개, 사회적협동조합 4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25개의 협동조합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은 2,630명, 출자금 총액은 42억 1900만원에 달한다.

<그림 4. 조합원과 출자금 현황>

**협동조합 설립자 수 및 출자금 현황(1.31)**



□ 일반협동조합의 수는 전체에서 98.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반협동조합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전체의 97.5%, 출자금은 전체의 96.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일반협동조합의 수량에 비해 조합원 수와 출자금 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 할 수 있다.

□ 221개 일반협동조합에서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지역에서 설립된 협동조합은 51개로 전국의 일반협동조합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조합원은 758명으로 일반협동조합 전체에서 29.6%, 출자금은 10억 9,800만원으로 27%를 차지하고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가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협동조합이 많이 설립되어 있는 광주시의 경우 조합 설립 비중은 22.6%, 조합원은 362명으로 14.1%, 출자금은 약 2억3백만원으로 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협동조합의 설립 수에 비해 조합원들의 참여 규모와 경제적 참여는 적다할 수 있다.

5) 자료의 한계로 인해, 출자금은 1월 31일까지의 집계를 기초해 작성했다.

<표 3. 일반협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출자금 현황>

지역	협동조합	설립자총수	출자금총액(원)	설립자 평균	출자금 평균(원)
서울	51	758	1,098,065,000	14.9	1,448,635
부산	19	323	569,150,000	17.0	1,762,074
대구	4	83	45,000,000	20.8	542,169
인천	8	126	136,500,000	15.8	1,083,333
광주	50	362	202,700,000	7.2	559,945
대전	7	116	140,800,000	16.6	1,213,793
울산	3	23	103,500,000	7.7	4,500,000
경기도	16	104	201,000,000	6.5	1,932,692
강원도	6	157	322,100,000	26.2	2,051,592
충북	2	20	3,000,000	10.0	150,000
충남	11	90	177,340,000	8.2	1,970,444
전북	11	140	631,520,000	12.7	4,510,857
전남	17	130	162,300,000	7.6	1,248,462
경북	9	89	248,600,000	9.9	2,793,258
경남	5	29	14,500,000	5.8	500,000
세종	1	5	1,000,000	5.0	200,000
제주	1	8	3,200,000	8.0	400,000
	221	2,563	4,060,275,000	11.6	1,584,188

□ 한 개 협동조합 당 조합원의 평균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원도이며, 출자금 평균금액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북도이다. 강원도의 경우 정선아리랑시장협동조합의 조합원이 115명인 것이 영향을 미쳤으며, 전라북도의 경우 5억원의 출자금을 조성한 완주한우협동조합에 영향을 받은 결과이다.

□ 221개 일반협동조합 조합원 5인으로 설립 한 곳은 76개로 전체 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의 사업자협동조합인 골목가게협동조합은 조합원이 160명으로 제일 큰 규모이다. 100만원 미만의 출자금을 조성한 곳은 22개소이며, 가장 적은 금액의 출자총액은 5만원이다.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조성한 협동조합은 8개이며, 전라북도 사업자협동조합인 완주한우협동조합은 출자총액이 5억원, 1인 평균 3,125 원으로 221개 협동조합 중 최대 출자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4. 최소 · 최소 조합원 및 출자금 현황>

설립자		출자금	
<b>최소</b>	- 5인 76개(34.4%) 서울 14개(27.5%), 부산 4개(21%), 광주 22개(44%), 경기 6개(37.5%), 전남 8개(47%)	<b>최소</b>	<b>100만 미만 22개</b> 서울 5만원(상조coop/5명) 서울 16만원(영어교육coop/16명) 인천 28만원(평화렛츠coop/28명)
<b>최대</b>	- 서울 94명(지구촌협동조합-인력소개) - 부산 160명(골목가게coop-도소매) - 대구 63명(대구경북교통카드판매인coop-교통카드 및 부 스물품 공동구매) - 인천 31명(전국통신소비자coop-통신) - 광주 16명(참 언론-언론) - 대전 68명(대전서점 coop-도서출판유통) - 울산 13명(울산서점coop-도서출판유통) - 경기 20명(안산시민햇빛발전coop-태양광발전) - 강원 115명(정선아리랑시장coop-시장운영) - 충북 15명(월악산공이동coop-농산물직거래) - 충남 12명(EMO효소영농coop-유기농) - 전북 60명(완주한우coop-정육 판매유통) - 전남 18명(빛가람생명농업공동체coop-직거래,체험) - 경북 27명(고은마당coop-마을독서카페) - 경남 7명(경남3355소비자coop-도소매업 /빌립유coop-도소매)	<b>최대</b>	<b>1억 이상 8개</b> -완주 한우coop (16명/5억/인당 3,125만원) - 부산 골목가게coop (160명/202,200천원) - 경북 라라쿰 (16명/2억-호텔식당) - 강원 봉평 메밀coop (14명 / 165,000천원) - 인천 두레방아coop (10명 / 107,000천원) - 울산 서점coop (13명/1억) - 강원 친환경유통 coop(6명/1억)

### 3)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

한마디로 ‘걱정 된다’라는 말로 밖에 표현 할 길이 없다.

#### □ 외부 환경 요인에 자극받은 협동조합의 양적성장

외부 환경 요인으로 2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5인의 조합원과 최소출자금 규정이 없는 설립 요건이 한 몫하고 있다. 둘째, 협동조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다. 발빠르게 ‘협동조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거나 준비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협동조합 아카데미를 실시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는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신청과 수리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절차로 인해 지자체의 적극성과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이 비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주체의 요인 역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인식 전환이다. 어려운 살림살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한 상황에서 매스미디어에 이해서 제공되는 방대한 량의 협동조합 관련 정보를 통해 99%를 위한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질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둘째,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이 유발한 기대 심리의 작용이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것이 많이 알려졌음에도, 협동조합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지자체의 정책을 대하고 해석함에 있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예측하고 기대하는 태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 □ 대책이 없는 협동조합의 자원 조달

협동조합 설립 현황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자금의 규모나,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출자금 증액 필요성 등을 감안 할 때, 사업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출자금을 어떻게 조달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③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 출자증서를 담보로 출자금을 대출 받을 수 없다.

※ 일반 기업의 경우 주식담보 대출 허용, 우리사주조합의 경우 직원들이 자기 회사의 주식 취득을 목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 □ 협동조합의 양적 성장에 뒤지는 취약한 창업 인프라

협동조합이 발달한 서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못 지 않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에 의해 각 부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탓에 새로이 등장하는 다양한 협동조합이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 2. 협동조합 설립 중에 있는 곳들의 의견과 필요

※ 응답 : 17개 조직

돌봄(3), 의료생협(8), 주거복지(4), 식품제조 및 외식프랜차이즈 사업(1), 재활용(1)

협동조합 유형 : 사회적협동조합 (13), 일반 (3), 미정(1)

### 1) 주거재 은행 이용 현황

□ 17개의 조직 중 농협을 주거재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은 5개소로 의료생협 3곳, 주거복지 사업 조직 2곳 이다. 신협을 주거재 은행으로 이용하는 곳은 1개소가 있었는데, 이 역시 의료생협이다.

11개소의 경우 시중 은행을 주거재 은행으로 하고 있다.

□ 17개 조직 중 신협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3개소로 모두 의료생협이다.

- 17개 조직 중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8개 조직으로 신용대출 이용 6개, 담보대출 이용 3개 이다.
- 협동조합 전환 이후에 농협이나 신협으로 거래은행을 전환하기 보다는 대부분이 기존 거래은행을 그대로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다.

※ H 社의 의견

- \* 앞으로 협동조합 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봄.
- \* 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속성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다름으로 주식회사에 비해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음.
- \* 또한 일반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대표이사 및 대주주에 대한 보증 및 신용을 근거로 금리 및 조건을 판단하는 기존 금융거래의 시스템은 협동조합에 적합하지 않음.
- \* 금융권에 협동조합에 맞는 별도의 금융 거래의 기준과 조건이 수립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협동조합 금융인 농협이나 신협이 앞장서야 한다고 봄.

- 농협과 신협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를 못 느낀다는 점과 가까운 곳에 없어서, 지점이 많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많았다.

※ H 社 의견

- \* 신협은 기업금융이 안되고 제2금융권이므로 이율이 제1금융권에 비해 높음.
- \* 일반 상업 은행들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는데 비해 농협으로부터 영업 제안을 받은 적이 없음.
- \*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은행이 금융거래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판단함.

※ H 의료생협 의견

- \* 농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없음.

- \*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인식도 없음.
- \* 8년을 이용했어도 수수료 면제 혜택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 \* 법인 카드 갱신 시에도 인적보증을 요구하고 있음.

## 2) 협동조합 전환을 앞두고 이루어진 금융 상담

- 17개 조직 중 협동조합 전환에 따른 금융관련 사항에 대해 거래 은행에 문의를 해 본 곳은 3개이며, 4곳은 계획을 갖고 있다.
- 금융기관에 문의를 했거나 문의를 해보고 싶은 내용은 기존 금융서비스 이용의 승계나, 대출 연장, 신규 대출에 관한 사항이었다.
- 그리고 이들 대부분 거래 은행에서 부정적인 답변을 들었을 경우 다른 대안을 갖고 있지 않다.

### ※ H사의 문의 내용과 결과

- 문의 : 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전환 시 대출과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는가?
- 답변 : 현재 협동조합 기업 대출에 대한 본점의 명확한 지침이 없으며 잘 모름.  
과거의 사례(생산자협동조합 등)의 경우는 은행 대출에서 불리한 점이 있었음  
우선 주식회사의 대주주처럼 분명한 대출에 대한 책임이나 보증의 대상이 없음  
으로 인해 대출을 기피함.  
관련 서류 접수 시 모든 조합원들의 서류가 필요함으로 실무적으로 어려움.  
재무제표의 평가나 신용평가에 있어서 협동조합 기업에 불리하다는 내부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는 대출금리가 일반 주식회사에 비해 높음.
- 의견 : 일반 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으나, 현 주거래 은행인 기업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사규를 개정해 일반협동조합에게 중소기업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 했다는 답변을 들음. 다른 은행의 상황은 확인 안됨.  
협동조합 진영 내의 내부기금 마련이나 농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 금융권이 협동조합 기업에게 유리한 대출 기준이나 거래 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봄.

※ N 돌봄센터 문의 내용과 결과

- 문의 : 전환 후 퇴직적립금 및 기존 거래 계좌의 승계 문제
- 답변 : 양도양수의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함.

※ N.P 돌봄센터 문의 내용과 결과

- 문의 : 금융거래 업무 변경 건
- 답변 : 법인 취득 후 논의하자 함.

※ 기타

- K 돌봄 : 임대료 대출 건 문의 예정
- K 의료생협 : 대출자격 문의 예정
- M 의료생협 : 신용대출 연장 여부 문의 예정
- C 社 : 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대표이사 지분이 30% 미만일 경우 금융 거래 관계에 장애요인은 없는지 문의 예정

3) 은행에 대한 기대

- 현재 은행 거래의 대부분은 입출금 통장 및 급여이체 통장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신용대출은 행으로 이용하고 있다.
- 응답자들이 거래은행에 거는 기대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 |                            |                   |           |               |
|----------------------------|-------------------|-----------|---------------|
| • 예금과 적금(6)                | • 소액대출(1)         | • 금융상담(5) | • 단체퇴직금 적립(7) |
| • 사업비 대출(9)                | • 사업비 외 운영비 대출(7) | • 사업투자(4) |               |
| • 기타 사항 - 수수료 면제, 업무 효율화 등 |                   |           |               |

응답 결과를 보면 대출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체퇴직금 적립 및 금융 상담에 대한 욕구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4) 협동조합 단계에 따른 필요한 금융 지원 사항

□ 현재 사업 운영 과정에서 당장 필요로 하고 있는 금융 지원 사항에 대해 응답을 한 곳은 10개 조직인데, 주로 공간 임대를 위한 자금 조달을 비롯해 사업 확장을 위한 사업비 대출, 부채 승계 등에 대한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응답자의 과반수가 자금관리서비스, 계좌관리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같이 제시하였다.

□ 협동조합 단계 별 필요 금융 지원 사항

- 준비단계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
- 설립단계 - 조합원 출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대출
  - ※ 인당 출자금 규모는 적게는 3만원, 최고 금액은 1천만원.
  - 응답자의 3개소를 제외하고 출자금의 규모가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고, 향후 특정 시기를 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출자금 증액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운영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능가하는 자금지원이 필요, 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필요.
  - 업무 서류의 간소화,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필요.

3.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조달 정책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자금 조달 방안

□ 제도 시행으로부터 7년차에 접어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 정책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소금융 및 중소기업정책자금의 융자, 사회투자기금 조성, 민간기업의 사회적기업 지원, 각종 공모, 클라우드 펀딩 전문기관을 통한 클라우드 펀딩 등 이 자리를 잡았다.

(1) 공공 자금 대출

<표5. 공공자금 대출 >

미소 금융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이자율 : 4.5% 이내(고정금리)에서 복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상환방법 : 6개월 거치, 4년 분할 상환
	대부 분야	- 사업장 구입 또는 임대자금: 부지 구입지 / 임대차 보증금 - 시설비: 기계장비, 차량구입, 시설보수 및 인테리어 등

		- 운영자금: 상품 및 원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인건비 사용불가)
	운영	운영방식 - 복지사업자를 통한 간접 지원 ※ 복지사업자: 열매나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재)함께일하는재단
중소 기업 정책 자금	금리	매 분기별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공자기금) 대출금리에 따른 사업별 기준금리와 업체의 신용위험등급에 따라 차등운영 ('12년 1/4분기 공자기금리 : 3.55%) * 사업별 기준금리 - 창업·기술사업화·사업전환 : $\Delta$ 0.45% - 신성장 : +0.05% - 긴급 경안 : +0.35% - 소상공인 : 0%
	기간	- 시설자금: 8년(3년 거치, 5년 분할) - 운전자금: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 대출을 위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표 6.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신용 보증 기금	대상 기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이 없는 기업
	대상 자금 및 한도	-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 • 운전자금: 최근 1년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 범위내 (50백만원 이하는 매출액 검토 제외) • 시설자금: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범위내
	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서 - 보증료율 : 연 0.5%(조사수수료 전액 면제) -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협의 조정 가능) - 협약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금리 : 5% 미만(협약은행 진행시)</li> <li>- 연대보증인 :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li> </ul>
지역 신용 보증 재단	목적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운용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기간 : 2012.1.26 ~ 사업 종료시</li> <li>- 대상기업 : 인증 사회적기업</li> <li>- 보증제한기업</li> <li>• 신용보증기금 등과 동시 거래</li> <li>• 사회적가치 충실도 평가위원회 평가시 저평가 기업</li> </ul>
	내용	<p>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비율 : 영리사회적기업(90%), 비영리사회적기업(100%)</li> <li>- 증료율 : 연 0.5%</li> </ul> <p>* 기준보증료율: 연 1.0%(최저 0.5%~최고 2.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증기간 및 상환방법 : 5년 이내(1년거치 4년분할상환)</li> <li>- 대출취급기관 : 기업은행</li> <li>- 연대보증인</li> </ul>

출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 사회적기업 투·융자 펀드

### <표7.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융자 사업>

종류	관련 기관	내용
사회적기업 투자펀드	노동부와 민간기업 매칭으로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사회적기업(사회적가치와 성장가능성 높은 곳)</li> <li>• 규모 : 2011년 42억원, 2012년 40억원, 2013년 조성중</li> <li>• 운용 : 투자 4년 회수 3년, 1개사에 최대 5억원 투자</li> <li>• 현황 : 1호 펀드 4개 사회적기업 투자(12억원)</li> </ul>
소셜 파이낸스 파일럿프로젝트	사회연대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사회적 목적성이 있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자, 사회책임기업</li> <li>• 규모 : 10억원 조성</li> <li>• 현황 : 4개사 8억원 자금 지원(대출)</li> </ul> <p>나눔과 미래, 노리단, 송파위더스, 함께일하는세상</p>

출처 : <http://blog.naver.com/hwana88> 재구성

### (3) 클라우드 펀딩 및 공모전

- 클라우드 펀딩은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자금조달 방법이다.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는 클라우드 펀딩 기법을 사회적기업에 접목시켜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오마이컴퍼니가 대표적이다.
- 현재 진행 중인 공모전은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자들은 공모사업에 참가해 상금을 통해 사업자금을 스스로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공공히 하는 계기로 삼고 있다.  
공모 후 실재 사업으로 연계되지 않는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는 성장기 기업으로 자격 제한을 두기도 한다.

**<표 8. 사회적기업 발굴 공모전>**

공모명	주최	사업내용
세상 콘테스트	행복나눔재단	스타트업, 성장기 사회적기업 발굴사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연계
H-온드림	현대자동차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인큐베이팅 기간 종료 되는 팀을 대상으로 후속 지원
소셜벤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단계의 청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경연대회
아시아 소셜벤처대회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SEN)	상금지원과 함께 금융 및 투자업계에 사업초기 단계의 소셜벤처를 소개하는 대회
청년사회적기업가 Jump Up 프로젝트	KDB 대우증권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해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후속 지원사업

출처 : <http://blog.naver.com/hwana88> 재구성

### 2) 중소기업 자금 지원

※ 사회적기업 자금 조달 방안 중 (1) 공공자금 대출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생략

### 3) 소상공인 자금 지원

#### (1) 소상공인 정책 자금

- 소상공인 정책 자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설치되어 있는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과 기획재정부 산하 복귀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2013년 기금 규모는 7,500억 원으로 일반자금 3,600억 원과 특화자금 3,900억원이다.

- 업체당 최고 7,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를 가산한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이다.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후 대출금액의 70%는 분할 상환,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 상환 한다.
- 지원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인 사업체이다.

**<표9.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내용>**

구분	세부	신청요건
일반 자금	교육·컨설팅 수료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또는 소상공인진흥원 컨설팅을 수료한 소상공인
	나들가게	2010 ~ 2012년 나들가게로 선정된 소상공인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3등급 이상의 브랜드 또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사업 수혜 브랜드에 가맹점 운영소상공인
	시니어	시니어 창업스쿨 수료 또는 시니어 관련 컨설팅을 15H 이상 수료하고 총괄매니저의 추천을 받은 소상공인
	신사업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신사업 지원사업 또는 아이디어 상업화 지원사업의 수혜 소상공인
	물가안정 모범업소	행정안전부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장기실업자	최근 3년 이내 고용보험을 납부한 기록이 있는 자 중, 온라인 교육을 6H 시간을 이수한 -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취업활동을 하다 현재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실직고령자 : 자금 신청시 만 55세 가 넘는 자 중 과거 구직 등록 후 취업활동을 하다가 현재 사업을 영위
여성가장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6H 수료)	
특화 자금	소공인	제조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공인
	협업화	소상공인협업화 지원사업의 협업체에 속한 개별 소상공인(협업 인식교육과정 6H 수료)
	성장유망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현장평가 및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카드) 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12H 이상 수료
	일반재해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출처 : <http://blog.naver.com/g4bnipa/10162775899>

(2)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 연계 대출사업(희망드림론)

□ 자활의지가 있는 지역내 영세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가 연계해 대출을 실시한다.

□ 대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출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대출금리 : 전전월 1년 만기정기예금금리 + 2.5% 이내  
(2012년 3월 적용 상한금리 7.14%)
- 보증요율: 보증료0.2%감면
- 보증기관: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 대출한도: 같은 기업당 운전자금 5천만원, 시설자금 1억원

(3) 소상공인 공제기금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규정에 근거해 2007년 9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 제도의 특성(출처 : 노란우산공제 [http://www.8899.or.kr/jsp/kma/kma\\_intro.jsp](http://www.8899.or.kr/jsp/kma/kma_intro.jsp))

-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며,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 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기존 소득공제상품 가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게 되면 최대 연 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한다.

□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능하다.(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안됨)

소기업 · 소상공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상기 업종 외의 업종 (도매 및 소매업 등)

□ 공제사유

<표 10. 공제금 지급 사유>

폐업·사망	퇴임·노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사업자의 폐업</li> <li>•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li> <li>• 가입자의 사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li> <li>•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li> </ul>

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제언

□ 현장조사에서 제기된 요구를 중심으로 금융의 역할을 모색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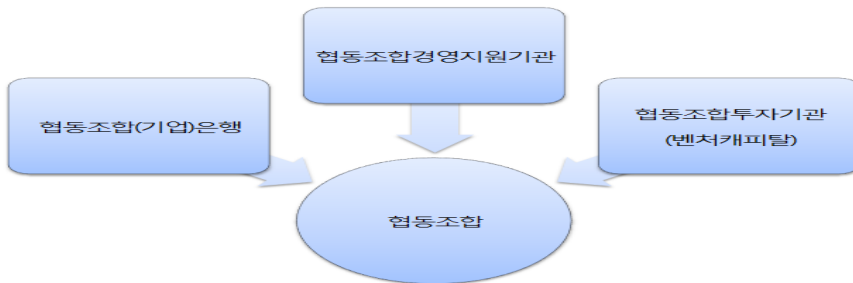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비단계 -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컨설팅 등 인큐베이팅 지원</li> <li>• 설립단계 - 조합원 출자금 조달을 위한 저리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당 출자금 규모는 적게는 3만원, 최고 금액은 1천만원.</li> <li>응답자의 3개소를 제외하고 출자금의 규모가 사업을 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을 하였고, 향후 특정 시기를 정하거나 지속적으로 출자금 증액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li> </ul> </li> <li>• 운영단계 -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증가하는 자금지원이 필요, 사업 확장 및 설비 투자 자금 및 운영자금에 대한 저리 대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 서류의 간소화,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 필요.</li> </ul> </li> </ul>
------------------------------------------------------------------------------------------------------------------------------------------------------------------------------------------------------------------------------------------------------------------------------------------------------------------------------------------------------------------------------------------------------------------------------------------------------------------------------------------------------------------

1) 협동조합 금융의 범주

□ 일반적으로 금융이란 ‘이자를 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기간을 정하고, 앞으로 있을 원금의 상환과 이자변제에 대해 상대방을 신용하여 자금을 이전하는 것(출처 : 경제학사전)’을 말한다.

- 그러나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에서 말하는 금융의 범주는 사전적 의미의 금융만이 아니라,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 한 새로운 협동조합의 등장이라는 상황을 고려 해 협동조합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동반한 투자 및 자원 조달의 내용을 포함하고자 한다.

<그림5. 협동조합의 금융이 내포하는 범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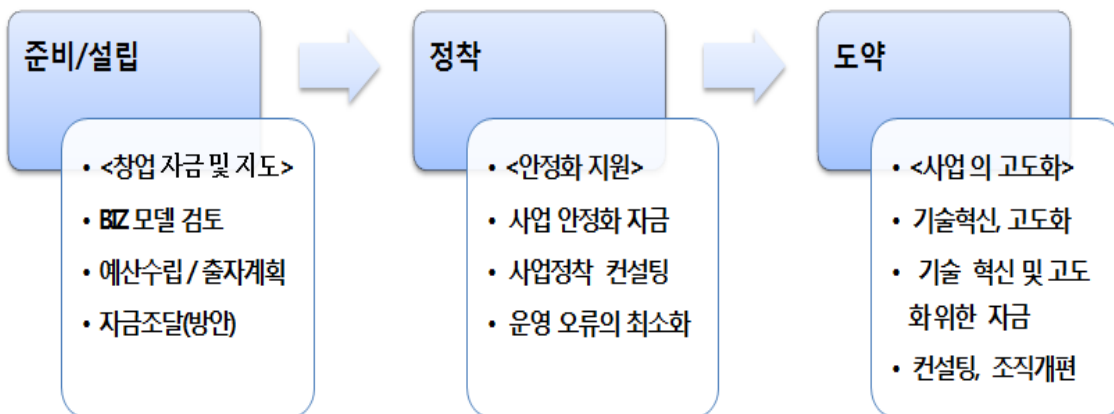


2) 협동조합 금융에 있어서 고려사항

- 협동조합의 생애주기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생애주기를 크게 준비 및 설립 단계, 사업의 정착 단계, 사업의 도약을 위한 단계 등 3가지로 구분할 때 각 단계별로 필요한 것은 아래 그림의 내용과 같다.

<그림 6. 협동조합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사항들>



-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적 관점

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것이 -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은 더욱 더 - 처음이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설립 대출이라 할지라도 투자적 관점에서 사업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컨설팅이 병행되도록 한다.



□ 과도기적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소의 지원 정책

기존 협동조합 진영의 인프라 활용이나, 창업을 위한 인프라 정비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기적으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 정책이 필요한 때이라 본다.

특히 공공 정책 기금을 협동조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 미소금융 및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에서 협동조합 출자자금 대출 등

※ 소상공인 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협동조합 창업·경영 컨설팅

###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장·단기적 과제 모색

#### (1) 장기적 과제

<그림 7.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장기적 과제>



□ 협동조합 전문 은행

금융의 대표적인 기관은 은행이다. 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특수은행 존재의 경제적 이유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자유경쟁과 수익성원칙 하에 움직이는 자동적 조절에 맡길 수 없는 금융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다. 즉, 사회정책상 또는 공공적 성격을 띠는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수은행 설립이 요청된 것이다. 현재 영업 중인 특수은행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이다. (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2010, 기획재정부), 경제학사전(2011, 경연사),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은행은 19세기 말부터 등장해 오랜 시간을 두고 성장해 왔다. 독일, 벨기에, 프랑스, 이태리, 영국, 스위스, 스페인,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 협동조합은행이 존재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최대 은행인 라보뱅크(Rabobank)는 모 기지에서 30%, 소매저축시장에서

43%, 중소기업시장에서 거의 4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농협경제연구소, NHERI 리포트제68호(2012. 3. 20))

협동조합의 육성과 자금조달 및 사업의 성장을 위한 전문금융기관으로서의 협동조합은행을 통해 협동조합과 개별 조합원들의 자금 조달과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부문별 협동조합연합회의 공제사업

공제사업은 조합원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표적인 자조활동이다. 특히 단위 협동조합을 넘어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통해 미래의 위험에 대응을 하는 공제활동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며, 연합회를 중심으로 사업으로 존재하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제일반법이 없는 상황에서 개별법에 의하거나, 개별법에 의해 지위를 갖는 연합회의 사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80조(사업)1항에 명시하고 있는 연합회의 고유사업에는,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 속한 조합원 및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3. 회원의 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사업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제80조 제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은 회원 단체에 대한 연합회의 리더쉽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연합회의 지원 활동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경영지원과 자금 지원이다.

그런데, 같은 조 3항에 ‘연합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연합회 차원에서 공제사업을 위한 기금조성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된다.

<표 1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공제>

산업분류코드		대분류항목
65302	<b>사업공제업</b> : 사업체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사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사업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한 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K. 금융 및 보험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51. 보험업 652. 재 보험업 653. 연금 및 공제업 6530. 연금 및 공제업 65301. 개인 공제업 65302. 사업 공제업 65303. 연금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현행 법률 중 연합회에서 공제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조합원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5조(사업의 종류) ① 연합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에 대한 지도·지원·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
  2. 회원에게 공급하는 물자의 개발과 개발물자의 구매·가공·제조·판매 등에 관한 사업
  - 3. 회원 또는 회원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
  4. 회원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 등 시설물의 설치·운영사업
  5. 회원의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사업
  6. 회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 또는 교부알선 사업
  7. 회원의 사업지원을 위한 채용의 조성 및 관리사업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연합회로부터 위탁 또는 보조받은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10.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6조(공제규정 등) ①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및 공제료 등을 정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제사업의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업무) ① 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조정 지원
- 14.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제35조의2(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3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사업의 실시와 관한 사항, 공제금, 공제계약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공제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7.25]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① 조합은 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 활성화자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합 활성화자금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위의 내용에 비취 볼 때,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되는 연합회의 공제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수 있으며, 연합회의 폭넓은 지원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비해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연합회 설립 요건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동조합연합회에서 공제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출자자본 요건을 법률로 두도록 해 조합원의 보호와 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 □ 협동조합투자자금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과 달리,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금은 협동조합과 그 외의 자들이 공동으로 조성 할 수도 있으며, 협동조합 이외의 진영에서 연대기금으로 성격으로 조성을 할 수도 있다. 특히 지역단위별로 기금을 조성 할 경우 지역 내 세력 연대 강화에 좀 더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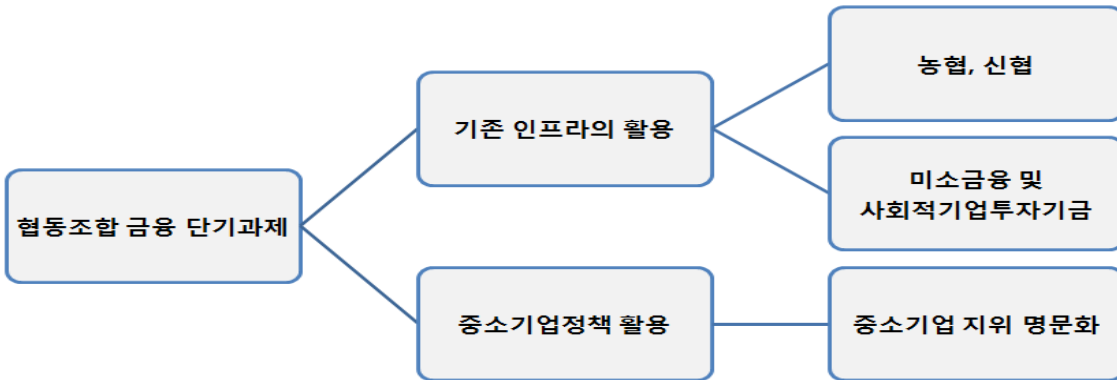
또한 기금이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협동조합은행에서 투자기금을 조성 해, 투자를 병행하는 것도 또한 방법이다.

투자 기금의 경우, 대출과 달리 사업에 대한 위험을 연대적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기에, 모든 사업에 개방되기 보다는 사회적 목적성, 혁신적 솔루션, 소셜벤처적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 사업에 투자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

특히, 협동조합 사업 발굴과 연동되어 투자기금이 운용될 경우, 혁신적 사업의 개발과 사업의 고도화에 좀 더 기여하는 효과를 내올 것으로 기대한다.

(2) 단기적 과제

<그림 8.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단기 과제>



□ 기존 협동조합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sup>6)</sup>

기존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은 자금조달 부분과 경영지도 및 인력양성 부분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① 대응투자에 의한 협동조합 창업기금 조성

신용협동조합 서울협의회(협의회장 임정빈 동작신협이사장)는 신규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 협동조합 금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을 갖고 1월 24일 서울시와 MOU를 체결하였다. 또한 성남주민신협이나 안산의 화랑신협이 신규협동조합 설립 지원을 위해 인큐베이팅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다.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협동조합의 7원칙 중 ‘협동조합의 협동’이라는 제6원칙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선배협동조합의 역할이 기대가 된다. 신협서울협의회 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신협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설립 초기에 겪는 어려움은 훨씬 경감될 것이라 본다.

그러나 현실 운영이라는 면에서는 그다지 녹록하지 않은 점이 있다.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주체들에게 사업적 신용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담보여력도 불투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용협동조합이 안아야 할 위험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 신협과 함께 별도의 기금을 대응투자방식으로 구성을 하고, 지자체가 창업협동조합의 신용을 담보해주고, 이자율 경감에 따른 반대급부 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② 농협 내 협동조합 전담 창구 설치

신협인프라를 활용하는 것과 함께 농협 내에 협동조합 금융을 담당하는 전담 창구를 개설해 농

6) 지난 1월 30일, 노동자협동조합추진단 발족식 및 토론회에서 발표했다던 ‘노동자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제언’ 중 일부를 재구성했음을 밝힌다.

협의 풍부한 자금과 낮은 금리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더불어 협동조합에 대한 회계프로그램의 지원과 지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협동조합의 출발과 사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농협의 보험 기능을 활용해, 협동조합연합회가 갖고 있지 못한 공제활동의 공백을 메워볼 수 있다. 4대 보험을 좀 더 보충하거나, 4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조합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맞춤형 보험 상품의 개발 등은 협동조합연합회와 농협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될 수 있다.

### ③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콘텐츠와 인프라 공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도 클 것이라 기대된다. 생산자협동조합의 사업 모델 안내와 경영지원에 있어서는 그 어떤 협동조합 보다도 연관성이 크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대상에 대한 지원과 사업 기회 및 인프라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내부정책과 이를 보장 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④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의 활용

미소금융 및 사회적기업투자기금의 지원 대상을 협동조합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방안으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지원대상과 동일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며, 특히 출자를 약정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시에서 조성한 사회투자기금의 경우 협동조합을 투·용자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 기금에서도 개별 조합원들의 출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 협동조합기본법에 중소기업 지위 명문화를 통한 중소기업정책의 활용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설립 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법에서 중소기업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 업무지침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지원’ 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 <협동조합 업무지침>

- 일반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요건에 충족할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 따라서 중소기업 지원 정책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 범위에 추가 예정(중소기업청과 협의 중)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매출액 300억 이하)

업무지침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협동조합의 거래 은행이나 중소기업청 및 관련 기관에서 협동조합의 지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협동조합기본법에 업무지침 상의 내용을 명문화 하고 중소기업기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기본법에 설립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여되는 세제혜택과 정책 자금 활용 등의 기회를 협동조합에게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토 론 문

조혜경

(한화생명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 토 론 문

이현배  
(성남주민신용협동조합 전무)

---



#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신탁의 역할

이 현 배  
(성남주민신용협동조합 전무)

## 1. 최근 동향

### 1) 사회적경제 영역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신규설립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에서는, 향후 사업의 안정화 및 경영활성화 측면에서 금융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기존 금융협동조합(농협, 신탁 등)의 협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2) 공공영역

- 한편 정부(기획재정부)도 건전한 협동조합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기존 금융협동조합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
- 또한 서울시는 ‘협동조합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협동조합(농협, 신탁 등)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신탁과 MOU를 맺을 예정임.(4월 1일 예정)
- 특히 서울시는 협동조합 성장기반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 협동조합 자본조달 기반구축을 주요하게 고려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협동기금을 조성하고 협동조합 대출시 농협, 신탁, 새마을금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자금지원(대출)을 실행할 예정임.

- 한편 서울시 뿐 만아니라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을 통한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실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민관협력기구 또는 지역단위 협의회, 동종 연합회 구성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3) 신협

- 2011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신협 내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맞이하여 신협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 논의 결과, 협동조합간의 협동의 원칙에 충실하며 신협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신규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동과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신협 중앙회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음.
- 또한 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신협서울지역협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와 MOU를 통하여 서울지역 협동조합 활성화에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한편,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되는 지역단위 협동조합협의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단위 신협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단위 사회적경제네트워크를 건강하게 발전시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됨.

## 2. 신협의 역할강화 및 법과 제도 개선 방향

### 1) 목적 및 취지

- 신협의 협력강화를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신규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 함.

- 협동조합기본법 시대를 맞이하여, 협동조합 간의 협동 및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적극적인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신협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배타적인 정부 및 사회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신협의 신뢰 및 인지도를 확보 함.
- 또한 협동조합 간의 협동 및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적극적인 협동과 연대를 통하여, 신협의 협동조합다운 정체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금융협동조합 및 서민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 함.

## 2) 협력 영역

- ①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대출, 투자, 출자 등 금융지원
- ② 협동기금 조성
- ③ 신협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조합 교육
- ④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시장 확대를 위한 구매 및 유통지원
- ⑤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조직의 재무회계, 경영컨설팅의 교육 및 지속적인 관리(모니터링)
- ⑥ 단위신협의 지역단위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참여 및 역할 강화
- ⑦ 전자금융(VAN사업 등)결제 등 기타 공동협력사업 등

## 3) 신협의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 방안

- ①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내지 투자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협동조합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지원 방법에는 대출, 투자, 출자 형식의 지원과 기금 조성 등에의 참여를 들 수 있음
- 하지만, 현재 신탁의 경우 타 법인에 대한 출자나 투자를 할 수 없으며, 기금 조성에는 여건상 어려운 상황
- 결국 대출을 통한 지원방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대출을 통한 지원 방법의 경우 총당 등의 부담이 커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렵고 또한 대출만으로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협동조합 등에 대한 출자 내지 투자가 가능하도록 개선이 필요
- ※지원 방식별 비교

구분	대출	투자	출자	기금
의미	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려 주거나 빌림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음	회사나 조합 등 공동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이 자본을 내는 일	특정 목적을 위해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재정자금
법적 지위	채권자와 채무자	투자자와 사업자	조합원과 조합	기부자와 수익자
지원 방법 등	유상	유무상 혼합	유무상 혼합	무상 (기부형태)
기간	단기(만기)	중기(사업종료 혹은 다른 투자자와 대체)	장기(정관에 따름)	영구
참여방식	소극적	적극적	적극적(직접 설립 가능)	적극적
수익	이자	투자규모에 따른 수익 배분	출자 배당	없음
리스크	대출의 경우 보증상품을 통할 경우 신탁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가 가장 적을 수 있음. 다만, 보증이 없을 경우 초기에는 투입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방식간 리스크 차이는 크지 않을 것임			

- 타 협동조합의 경우에도 타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 농협은 농협법 제57조(자기자본 범위 내에서)에, 수협은 수협법 제60조(자기자본 범위 내에서)에,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6항(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서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 관련 법규 및 개정의견

○ 신협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에 조항 신설

(신설) ④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합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타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이용을 위한 준조합원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신협은 조합원의 이용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일부 허용하고 있음

○ 현행 신협법상 타 협동조합이 법인조합원으로 가입하더라도 그 구성원은 당연 조합원이 되는 것이 아니며, 신협의 공동유대를 벗어난 경우에는 가입도 할 수 없음

○ 다른 협동조합의 구성원은 대부분 신협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조합원이기 보다는 신협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조합원일 것으로 판단됨  
- 만약,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대규모로 신협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원으로 가입한다면 신협의 경영진은 지배구조에 위협을 느낄 수 있으며 다른 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의 참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음

※ 신협은 1인1표제이기 때문에 다수의 조합원을 가진 협동조합은 신협의 경영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악의를 가지고 접근할 가능성도 배제 못함

○ 아울러, 다른 협동조합의 조합원 입장에서조차 단순히 신협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신협에 가입하였는데, 그 신협이 부실 운영되었을 경우 출자금의 환급이 제한되는 등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음

※ 이와 관련 신협은 현재 금융위원회 주도로 손실조합의 경우 출자금중 손실부분을 제외하고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2013년 중 도입 예정)

○ 따라서 준조합원제도를 도입하여 단순히 신협의 서비스만을 이용하는 조합원과 경영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을 분리하는 것이 필요함

○ 농·수협, 산림조합은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수협의 준조합원 제도는 농·수협을 이용하고자 하여도 원래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나,
- 실질에 있어서는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사람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 조합원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사업 확대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
- 농·수협의 경우 조합원 거래 규모는 30%에도 미치지 않음

□ 관련 법규 및 개정의견

○ 준조합원 제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1조의2 신설)

- 준조합원 제도 도입에 따라 가입금을 자기자본으로 편입하고(안 제2조 제9호)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근거(안 제53조제2항) 마련

○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 조합원(경영참여)과 준조합원(이용자)을 구분하여 다른 협동조합 조합원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근거 확보

- 조합원 분리를 통해 이용조합원을 구분하여 조합원 제도의 선진화 기대가

능

- 준조합원은 안정된 지위에서 신탁 이용 가능

현행법	개정안
<p>제2조(정의) (생략)</p> <p>1. ~ 8. (생략)</p> <p>9. “자기자본”이라 함은 <u>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u>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8. (현행과 같음)</p> <p>9. “자기자본”이라 함은 <u>자본금·적립금·가입금 및 기타 잉여금 등의 합계액</u>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p>
<p><u>&lt;신설&gt;</u></p>	<p><u>제11조의2(준조합원)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u></p> <p><u>② 조합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u></p> <p><u>③ 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 및 탈퇴시 가입금의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u></p>
<p>제53조(이익금의 처분) ① (생략)</p> <p>②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고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p>	<p>제53조(이익금의 처분)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을 공제한 잔여이익금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납입출자금에 비례하여 조합원에게 배당한다.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u>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해</u> 사업이용실적에 비례한 배당을 병행할 수 있다.</p>

③ 지역신탁의 공동유대를 “인접 시·군·구” 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현실화

□ 현황 및 문제점

- 이동의 편의성 확대와 거래 개념의 변화, 개인의 경제권과 생활권이 광역화 되면서 개인의 경제권과 생활권 범위가 넓어짐
- 하지만, 지역 신흥의 공동유대는 10년이 지난 2003년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구라도 인접(최대 3개 읍·면·동까지)한 경우 인정’ 하는 것으로 규정된 후 변동이 없음
- 신흥의 공동유대 제한은 신흥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입장에서 도현실과 너무 괴리가 크고, 조합원의 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사항임
- 이러한 부분은 신설 협동조합 등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조건 등에 있어서의 선택권을 침해 받게 되고, 지원할 여력이 있는 신흥이 없는 지역의 경우 지원 기회조차 없을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지역의 경우 오히려 지역경제가 낙후된 경우가 많을 수 있는데 이러한 지역에서의 협동조합 설립 등이 제약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의 양극화 내지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게 될 것임

□ 관련법규 및 개정의견

- 신흥법시행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① (생략)

1. 지역조합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하나의 시·군·구.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인접하고 있어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시·군·구를 포함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참고 : 공동유대 변경 이력(신협법시행령 제12조(공동유대 범위 등))

일 자	변 경 내 용
1998. 4. 1	행정구역이 인접한 5개 이내의 읍·면·동
1999. 4.19	동일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 한한다)·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2003.11. 4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협동조합 등에 대한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에 대한 부담 완화조치 마련

##### □ 현황 및 문제점

- 협동조합은 처음 출발하는 형태여서 사업성 등을 담보하기 어렵고, 유사한 형태인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사례로 보면 그리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형편임
- 또한, 사업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감독당국은 자산 건전성 강화를 위해 매우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신협의 입장에서는 단계적으로 강화되는 충당요건을 이행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상황
-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은 현행으로는 앞서 조합원 자격범위 확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 방식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건전성분류기준이 고정단계 없이 바로 요주의에서 회수의문으로 분류되게 되어 있는데 충당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되어 있음
- 한편, 신협의 입장에서도 건전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적극적 완화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사안이며, 여타의 대출과의 형평성 때문에 주장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음

□ 관련 법규 및 개정의견

○ 관련법규

- |                                                                                          |
|------------------------------------------------------------------------------------------|
| <p>1. 상호금융업감독규정 &lt;별표 1-1&gt; 자산건전성 분류기준</p> <p>2. 상호금융업감독규정 &lt;별표 1-3&gt; 대손충당금비율</p> |
|------------------------------------------------------------------------------------------|

- 적극적인 개정의견은 없음. 하지만, 협동조합관련 대출에 대해 일정기간 대손충당을 유예하거나 건전성 분류기준을 완화하면 일시적으로는 타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신협외의 건전성에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효과는 예측 불가). 이 부분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보증부대출상품을 보급하는 것임

# 토 론 문

강완구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





# 토 론 문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장)

---



# 토 론 문

정원각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표)

---



# 아이쿱생협의 새마을금고 추진과 현재의 문제

정원각 대표(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 1. iCOOP생협 현황 :

- 2012년 매출 3,449억 원, 조합원은 170,127명(조합비 조합원 : 129,850명), 연합 조직 직원은 1,350명(시급직 포함하면1,468명) 전원 정규직. 지역생협의 직원(매장 매니저, 사무국 회계, 상담, 총무 등) 포함하면 2,000명

## 2. 아이쿱생협의 경제, 사회적 역할 : 자금이 필요한 사업적 성과를 중심으로

### 1)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

- 2010년 배추 값 폭등, 2011년 배추 값 폭락 때 가격 안정
- 2010년부터 소비자 위해 이중곡가제 (대상품목 : 쌀) : 생필품으로 확대 중.
- 2011년 구제역 파동 등으로 인한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대응
- 2012년 6월 아이쿱라면 공장 설립으로 수입밀 사용하는 일반 라면 가격 이하로 낮춤
- 가격 안정 기금을 운영 : 2009년부터 소비자 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함. 현재까지 53억 원을 모아서 30억 원을 사용

## 2) 우리 밀 수매를 통한 농가 소득 안정

- 생협 중에서는 유일하게 농민들로부터 우리밀을 직접 수매를 함.
- 2012년 자본 기업들의 우리밀 사업 철수 검토할 때, 농민들이 생산한 우리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밀 관련 제품 평균 30% 인하를 추진

## 3) 고용 유지

- 아이쿱생협의 자회사인 (주)농업법인쿱스토아는 2011년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어 2012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상을 받음.
- 2012년 12월 현재 아이쿱생협에서 일하는 직원을 보면 연합 조직은 1,350명 정도. 지역 생협의 매장과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 포함하면 2,000명

## 4) 농민들이 빚을 지지 않고 농사를 하도록 지원하고

- 수매선수금 : 조합원들 중에 약 13%가 수매선수금 운동에 참여하여 농민들에게 계약과 함께 먼저 지급을 하는 운동 실시. 매월 약 40억 원 정도가 미리 들어오고 있음.
- 조합원 채권 : 조합원들에게 일정 금리(세 후 공공금리)를 제공하면서 수매자금 차입.

### 3. 사업에 있어서 자금 조달, 금융업의 필요성

1) 초기 계약과 수확기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조달의 어려움 -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계약 생산을 하고 수매 후 보관을 해야만 가능함. 계약 생산을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영농자금을 미리 지불해야 하고 수매 때에는 가능한 많은 수매 자금이 필요함. 2011년을 기준으로 보면 수매 물량 쌀 110억, 흰콩 50억, 잡곡 30억, 우리밀 30억 등 220억이 사용됨. 농협의 수매자금 지원은 물적 담보를 제공해야 가능. 220억 수매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400억 이상의 담보가 있어야 가능한데 매년 사업물량이 늘어나는 흐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2) 일반 은행에서 불리한 대우 - 한국의 일반 은행에서는 협동조합의 출자금을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인해 대출이 불리함. 심지어 건물과 같은 부동산도 담보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음.

3) 자금 조달 비용의 증가 - 소비자, 농민 생산자들을 위해 하는 가격안정기금 등은 조합원이 매월 내는 회비(조합비) 중에 일부 금액과 생산자들이 판매 금액에서 1% 정도를 적립하고 생협이 조합원들에게 차입을 하여 조성함. 조합원 차입은 세금 부담이 큼. 은행에 비해 약 1.5% 정도의 비용 증가함.

4) 조합원들에게 차입 또는 예금에 대한 안전성 제고.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새마을금고 등은 자체 기금을 통해 5천만 원 이하에 대해 원금 보장을 하고 있음.

5) 금융 사업을 통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공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공제사업도 일종의 금융사업인데 이를 준비하기 위한 물적 토대와 운영 경험 그리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음.

6) 비수도권과 같이 낙후된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한 자금 동원 가능. 아이쿱생협은 전남 구례, 충북 괴산과 같은 비 수도권 지역에 친환경식품가공단지 를 조성하고 있음. 여기에는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와 같은 지역 사회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 가능해짐. 예를 들어 전남 구례(재정자립도 10% (연도마다 조금 다르나 9~11%) 내외)와 같은 낙후 지역에 우리 밀로 만드 는 라면 공장을 비롯해 10개의 식품 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 중에 일부는 조합원 차입으로 하고 있음.

7) 기존의 축산을 비롯한 농가들이 생협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 요함. 양돈이나 하우스 등 시설이 들어가는 농가들이 그 시설 자금을 농협 등을 통해 대출을 받았는데 농협과 거래를 하지 않고 생협과 거래를 하기 위 해서는 농협에 갚을 자금이 필요함. 생협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4. 아이쿱생협이 새마을금고를 선택한 이유(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 1) 금융협동조합 설립의 필요

공제회를 제외한 금융사업을 허용하지 않는 생협법과 금산 복합협동조합의 설립을 금지하는 협동조합 법제 하에서 생협의 금융사업 진출은 금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협동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념적, 제도적으로 생협이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윤리적, 사회경제적 가치와 이념적 지향에 가장 부합하는 금융사업체 형태는 금융협동조합인 신협과 새마을금고라고 할 수 있다. 신협과 금고는 성격이 동일하며 사업범위에서도 차이가 거의 없다.

##### 2) 지역 조합의 제약의 문제 - 구역 제한

지역 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 제한이 존재한다. 지역 단위로 제한된 조합원 자격 요건으로 인해 영업행위가 해당지역으로 제한된다. 비록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에는 제한이 없지만 최대 광역시 단위의 행정구역에 근거지를 두고 전국적 차원에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데에는 실질적인 제약이 뒤따른다. 생협사업연합회의 회원조직과 협력단체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으로 한정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의 기준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3) 직장/단체조합 설립

지역조합보다는 직장/단체조합이 보다 적합한 형태일 수 있다. 생협사업연합회 및 소속 자회사의 임직원과 그 가족을 비롯해 지역 회원조직과 협력단

체가 모두 회원이 될 수 있고,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과정에서 중앙회나 감독 당국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장/단체조합의 최대 약점은 규모의 한계이다.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 내 무차별한 대중이 잠재적 조합원이며 따라서 적극적인 조합원 획득 노력 없이도 고금리나 비과세 혜택을 통해 조합원 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직장/단체조합은 법령에 규정된 공동유대의 범주 내에서만 조합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직장/단체조합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조합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규모의 영세성, 즉 자금동원능력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4) 새마을금고의 장점 : 결론적으로 운영과 관련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새마을금고가 신협보다 유리할 수 있다.

- 새마을금고는 신용사업과 기타사업(지역개발사업, 문화 복지 및 후생사업)을 동등한 비중으로 할 수 있으며,

- 비조합원(개인, 법인 모두 가능)의 신용사업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대출사업에서도 운신의 폭이 훨씬 크다.

- 지역개발을 비롯한 기타 존립목적에 부합할 경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가 가능하다.

- 대출사업뿐만 아니라 출자가 허용된다는 것은 향후 생협의 사업 확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5. 새마을금고 추진의 어려움

1)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설립인가는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의 소관이나 각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음. 이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현재는 기초자치단체가 인가를 하고 있음. 하지만 인가절차는 우선 설립신청 서류를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접수하고 중앙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전 의견 제시를 행사하고 있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다시 새마을금고중앙회지역본부에 그 역할을 맡김.

2)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내부 경영 방침에 의해 새로운 새마을금고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함. 이유는 부실한 새마을금고 양산을 막기 위함이라고 함. -> 하지만 이러한 내부방침은 법적 정당성 없음.

3) 아울러 단위 새마을금고 규모가 작고 부실한 곳은 통폐합하고 있다고 함. 서민들의 사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실금고 통폐합은 필요함, 그러나 그것이 모든 설립요건을 충족한 새로운 금고설립을 막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됨.

## 6. 새마을금고중앙회경기본부의 최종 의견과 이에 대한 반박

1)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가 제출한 새마을금고 인가 요청에 대해 부적절로 의견을 냄.

## 2) 부적절한 이유와 반박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직장 생협은 유래가 없다.

=> 아이쿱생협과 같이 전국에 걸쳐 있지는 않아도 일부 직장새마을금고가 2개 이상의 광역, 기초 행정 구역을 사업 구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기존 새마을금고와 사업구역이 겹쳐 갈등을 유발한다.

=> 직장새마을금고이므로 지역새마을금고와는 사업 구역이 겹친다고 볼 수 없다. 겹친다면 다른 대기업 직장새마을금고는 어떻게 허가를 했는가? 또한 아이쿱사업연합회직장새마을금고는 한 기초자치단체에 20명 내외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으므로 겹치지 않는다.

### ● 참고로 아이쿱직장새마을금고의 조합원 대상은

-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소속 임원과 직원, 가족
-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회원 조직(지역 생협)의 임원과 직원(매장과 사무국), 가족
-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와 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원과 직원, 가족

등으로 현재 2,000~3,000명 정도가 대상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 7.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아이쿱생협직장새마을금고를 인가해야 하는 이유

1) 현재 부실한 새마을금고는 모두 조합원 결속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지역 금고임. 반면 아이쿱생협은 설립 이후 15년 동안 다져온 조합원 결속력과 생

산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직장금고를 설립하고자 함. 참고로 아이쿱생협은 2012년 매출이 3449억 원, 조합원 17만 명, 출자금이 185억(기금 출자 포함) 원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재무 건전성이 좋은 협동조합임.

2) 유럽에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자체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예금과 적금은 대부분 하고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농협, 수협 등이 금융사업을 겸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생협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 이는 불평등한 사항임. 그러므로 자체 금융은 아니어도 새마을금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1995년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발표한 협동조합의 원칙 중에서 제6 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으로 정하면서 “협동조합은 지역, 전국 그리고 인접 국가, 국제적으로 함께 일함으로써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하고 협동조합 운동을 강화한다”고 정리하고 있음. 새마을금고는 ICA에 가입한 금융 협동조합으로서 소비자협동조합인 아이쿱생협을 인가해야 함.

4) 아이쿱생협의 재무 건전성이나 새마을금고법의 조항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직장(또는 단체) 새마을금고 설립을 중앙회가 거부할 근거가 없으므로 승인하는 것이 마땅함. 더구나 단체(또는 직장)로 만들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설령 부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관련자에 국한됨.

## 8. 경과

- 1) 2000년 들어서 장기적인 사업 계획으로 협동조합 금융의 필요성이 제기 됨. 이후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절차와 방법을 알아봄.
- 2) 1997년 IMF 구제금융 이후 지역 신협 설립인가 중지(법적 보다는 실제 인가 안남)
- 3) 2008년 ICA 가입 후 한국협동조합협의회에서 타진했으나 진전이 안 됨
- 4) 2011년 5월 : 협동조합 금융에 대한 연구 발주
- 5) 2011년 11월 : 협동조합 금융에 대한 연구 결과 완료
- 6) 2011년 12월 :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설립추진위원 구성 결정
- 7) 2012년 1월 : 권역대표자회의에서 추진위원 추천을 받음
- 8) 2012년 1월 31일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면담
- 9) 2012년 2월 10일 : 새마을금고경기본부 방문

10) 2012년 3월 16일 : 발기인대회

11) 2012년 4월 10일 : 창립 총회

12) 2012년 5월 하순 :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서류 제출(우편) -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지도, 지원을 하지 않아 신청서에 있는 서류만 갖추어 배달 증명으로 서류를 접수.

13) 2012년 6월 초순 :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새마을금고경기본부로 서류를 직접 접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려함.

14) 2012년 6월 25일 : 새마을금고경기본부에 접수 : 이후 새마을금고경기본부에서 접수 날짜를 7월 2일로 변경해 달라고 해서 변경하는 공문을 다시 보냄.

15) 2012년 7월 23일 : 새마을금고경기본부가 신청 서류를 군포시청에 이관

16) 2012년 9월 18일 : 군포시청에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나타나 군포시청 방문하여 시장 면담. 시장은 실무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검토는 하겠다고 함.

- 17) 2012년 9월 26일 : 군포시청으로부터 인가 부적합으로 옴.
- 18) 2012년 11월 9일 재창립 총회 : 정관과 사업계획 등을 다시 수정하여 총회를 다시 함.
- 19) 2012년 12월 21일 : 인가 부적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서류를 완비하여 새마을금고경기본부에 설립신청서류 제출 함.
- 20) 2013년 1월 2일 : 새마을금고경기본부로부터 방문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 감. 설립교육과 사업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며, 서류보완을 요청. 설립교육 신청하여 서류보완하여 제출하겠다고 전달 함.
- 21) 2013년 1월 7일 : 설립교육 신청 공문을 새마을금고경기본부에 발송
- 22) 2013년 1월 17일 : 새마을금고 설립교육과정 신청을 반려한다는 공문을 보내 옴. 회원사(지역조합)가 발기인 자격이 없어 창립총회가 성립되지 않으며, 임원들이 회원자격이 없는 회원사 소속으로서 교육과정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반려함
- 23) 2013년 1월 23일 : 교육반려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냄. 지역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들이고, 각 조합원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있으며, 본 생협은 이러한 각 조합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이다. 그렇다면 각 조합들은 협력단계에 있는 법인, 단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각 조합의 조합원들은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등에 소속된 자에 해당된다. 하여 이들로 구성된 창립총회와 임원선출 역시 적법하고 유효하다. 혹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설립을 위한 교육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보냄.

24) 2013년 1월 29일 : 새마을금고경기본부로부터 기 시행한 문서의 내용과 동일함을 통보하여 반려함을 공문으로 보내 옴.

25) 2013년 2월 18일 : 교육은 반려하였으나, 사업계획 작성에 대한 지도를 진행해 달라고 새마을금고경기본부에 다시 공문을 보냄.

26) 2013년 2월 20일경 : 새마을금고경기본부로부터 유선으로 전화가 옴. 담당자도 변동이 있고 하니, 유선으로 불가함을 전달하겠다고 함. 강력하게 반발하여 공문으로 내용 전달해 달라 요청 함.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27) 2013년 2월 25일 : 공문이 도착하지 않아 담당자 핸드폰으로 답변 요청하는 문자를 보냄. 답변이 없었음.

28) 2013년 2월 27일 : 사업계획 지도에 대한 답변 재 요청 공문을 보냄.

29) 2013년 3월 12일 : 사업계획 지도에 대한 3차 답변 재 요청 공문을 보냄.

